##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4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 맹성규·강민정·권칠승

김민석 · 김승원 · 남인순

서영석 · 양정숙 · 유동수

이병훈 · 이상민 · 이성만

이수진비 · 임종성 · 전혜숙

최혜영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은 평균 69.4%에 불과해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상태로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적합 설치율 향상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

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상시설이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	
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	
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u> &lt;신 설&gt;</u>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른 심사 결과 대상시설이 이동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③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u>&lt;신 설&gt;</u>	제12조의2(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
	<u>관</u> 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
	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대상
	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